

일 반 의 안

(1 천)

거 창 군

--- 목 차 ---

의 변 호	건 명	페이지
2023-170	2024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	1

2024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023- 170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거창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1. 제안이유

- 지식IN 거창아로리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 대상지로 정한 위치에 일부 사유지가 있어 이를 매입하고, 그중 다수의 토지를 소유한 거창중앙교회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외 구역의 일부 군유지와 거창중앙교회 토지를 교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사 업 명 : 지식IN 거창아로리타운 조성사업
- 위 치 : 거창읍 정장리 819-1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4. ~ 2027. / 4년
- 사 업 비 : 26,613백만원(국 13,127, 도 1.8, 군 13,484.2)
(용역비 1,128, 부지매입비 16,15, 공사비 23,870)
- 사업내용 : 단독주택 부지 32필지 조성, 타운하우스 16세대, 복합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 조성면적 : 43필지, 38,930m²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16필지, 14,898m² / 첨부1 참조

다. 처분(교환)재산 세부내역 : 8필지, 3,660m² / 첨부2 참조

라. 추진경과

- 2023. 2. 13. : 지역활력타운 공모지침 시달
- 2023. 4. 10. : 경상남도 평가위원회(도 신청대상 선정 시군 : 거창, 산청, 사천)
- 2023. 4. 17. : 국토교통부 방문 사업(안) 설명
- 2023. 4. 26. : 공모 신청서 제출
- 2023. 5. 16. : 통합선정위원회 현장점검(평가)
- 2023. 6. 2. : 공모 선정전국 7개소, 도내 유일 / 거창안제과산예산청도남원담양
- 2023. 7. 12. : 자문건축가(임지환 동윤건축사사무소 대표) 위촉
- 2023. 9. 15. : 지역개발계획(변경) 안 제출

마. 향후계획

- 2023. 11. : 중앙 지방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 2023. 12. : 지역개발계획(변경) 승인
- 2024. 12. :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 2025. 3. : 공사 착공
- 2027. 12. : 사업 완료

바. 기대효과

- 사업대상지 내 거창중앙교회 토지를 교환 취득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 은퇴자들의 주거 및 생활인프라 구축으로 안정된 정착과 지역 사회 활력 및 발전에 기여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3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4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첨부3 참조

첨부1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소 재 지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 면적				
계	16			18,086	14,898	338,548			
취득	토지	거창읍 정장리 1206	도	629	234	2,878	2024. 12.	지역활력 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국(기재부)
취득	토지	거창읍 정장리 산9	임	198	198	895			박*준
취득	토지	거창읍 정장리 917-14	과	5,424	5,424	111,734			중앙교회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산11-1	임	1,901	1,901	38,020			중앙교회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산11-3	임	1,388	225	11,677			김*술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422-10	묘	188	188	7,068			중앙교회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422-16	전	294	62	1,395			중앙교회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422-24	전	257	94	3,666			정*성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422-25	전	392	47	4,413			김*규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422-40	대	496	481	31,794			하*선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422-41	전	41	41	2,033			김*규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422-55	묘	1,087	990	8,583			중앙교회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422-56	전	1,430	1,430	33,462			중앙교회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422-57	전	309	51	1,244			중앙교회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422-23	대	524	4	306			유*분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422-43	전	3,528	3,528	79,380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지 교환	중앙교회

※ 기준가격 : 공시지가 × 면적

처분(교환)재산 세부내역

※ 교환대상 재산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422-43(전 / 3,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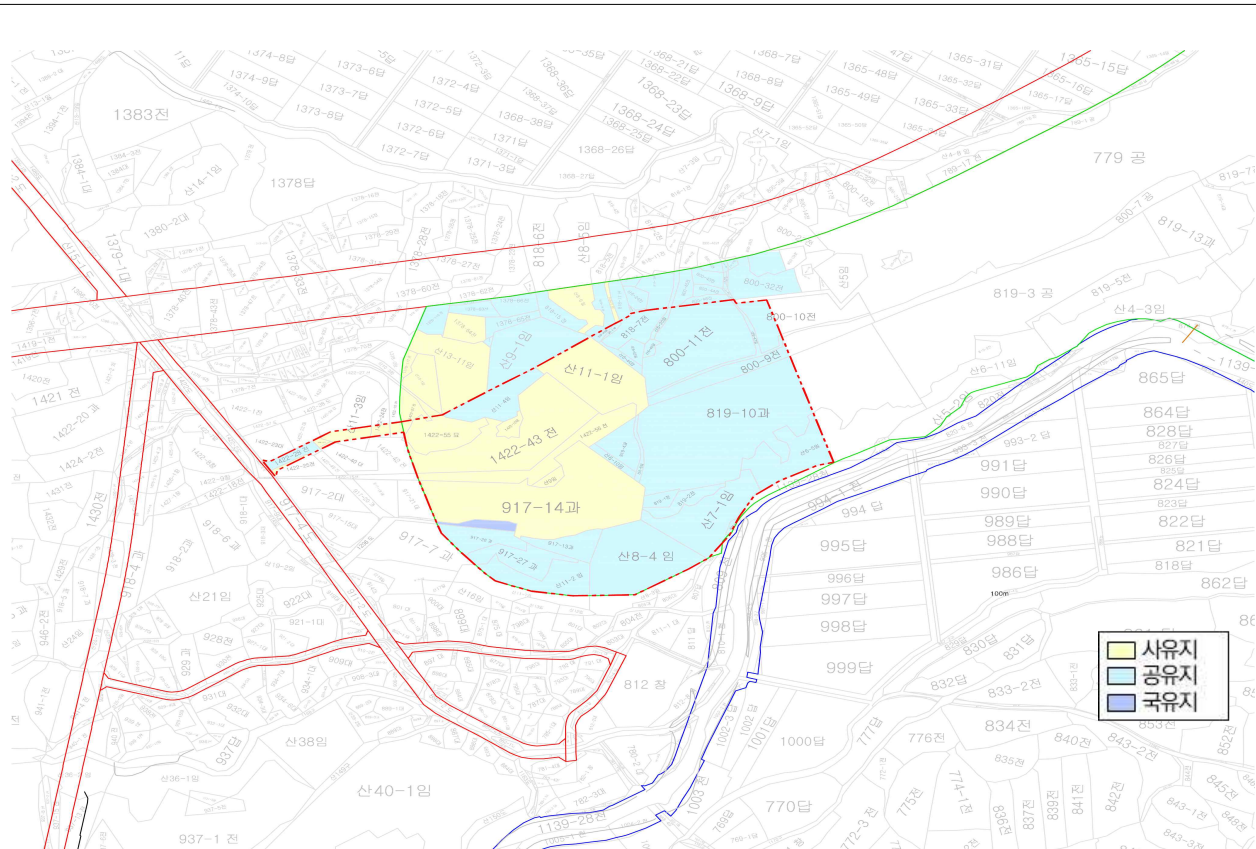


첨부3

위치도 및 전경사진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산9번지 일원



○ 사유지 및 국유지 확보 필요

②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편입부지 매입)

1. 제안이유

- 농식품부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면소재지 내 각종 행사공간 및 생활인프라 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주민(사업추진위원회) 건의사항이 있어 **지역민의 삶 질 향상** 목적을 위해 사업 대상지 토지 정비하여 **다목적마당** 조성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사 업 명 :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다목적마당 조성
- 위 치 :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488-3, 1488-4번지
- 사업기간 : 2023. 10. ~ 2024. 10. / 1년간
- 사업내용 : 다목적마당 조성
(행사공간, 야외공연장, 운동.레포츠 시설, 주민 쉼터 등)
- 사 업 비 : 1,900백만원
- 조성면적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집행잔액(555백만원) 활용 및
군비 등 추가사업비 확보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1)기준가격 (천원)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면적(㎡)				
계				84,455			
취득	토지	북상면 갈계리 1488-3번지	2,579	49,001	2023 ~ 2024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다목적마당 조성	
		북상면 갈계리 1488-4번지	1,866	35,454			

※ ¹⁾기준가격 적용 : 토 지 → 현.기준 공시지가
지 장 물 → 지장수목 등 미보상 조건 토지 매입

다. 추진경과

- 2018. 5. : 북상면 농촌중심지 기본계획 승인.고시
- 2021. 4. : 북상면 농촌중심지 시행계획 승인.고시
- 2021. 5. ~ 2023. 10. : 공사 착공 및 준공

라. 향후계획

- 2023. 11. : 경남도 집행잔액 재투자계획 협의 및 승인
- 2023. 12. : 편입물건 보상협의
- 2024. 이후 : 경남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 다목적마당 조성
공사 추진

마. 기대효과

- 면 행사 추진에 따른 공간 임대비용 절감
- 부족한 생활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역민 삶의 질 향상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첨부 참조

첨부1

위치도 및 지적현황



③ 마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복지회관 등 3건 처분)

1. 제안이유

- 농식품부 소관 농촌협약사업으로 추진중인 「마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면 행정복합타운”건립에 따른 사업효과 증대 및 주민이용편의 제공 목적을 위해 사업부지 내 기존 건축물을 처분(철거)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처분개요

- 사 업 명 : 마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위 치 :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247-4, 246-5번지
- 사업기간 : 2023. 1. ~ 2027. 12. / 5년간
- 사업내용 : 마리면 행정복합타운(문화자치센터 + 행정복지센터)
- 사 업 비 : 4,000백만원 (균 2,640, 도 860, 군 500)

나. 처분재산 세부내역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²⁾ 기준가격 (천원)	처분 시기	처분사유	비고
		시 설 명	면적 (㎡)				
		소 재 지					
계				178,223			
처분	건축물	복지회관	(2층) 600.25	147,420	2024 ~ 2025	마리면 행정복합타운 건립	
		마리면 말흘리 247-4번지					
		창 고	(1층) 144.00	17,568			
		마리면 말흘리 247-4번지					
		지역아동센터	(1층) 81.70	13,235			
		마리면 말흘리 246-5번지					

※ ²⁾기준가격 적용 : 건 축 물 → 가감정 결과

다. 추진경과

- 2018. 5. : 북상면 농촌중심지 기본계획 승인.고시
- 2018. 2. ~ : 군수님 연두 순방 시, “마리면 행정복합타운 건립”건의
- 2018. 9. ~ 2022. 4. :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완료)
 - 3필지, A=7,395m² (부지매입비 454백만원)
- 2020. 3. ~ 5. : “마리면사무소 정밀안전진단”실시 ⇒ 3)안전등급 B
- 2022. 6. : 2023년 농촌협약 선정
- 2023. 5. : “마리면 복지회관 정밀안전점검”실시 ⇒ 4)안전등급 C
- 2023. 6. ~ 2024. 2. :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 사업 착수설명회 및 주민위원회 협의 7회, 선진지 견학 1회 추진

※ 3) 안전등급 B : 구조적 결함이 없는 **양호한 건축물**

4) 안전등급 C : 주요부재 내구성 및 기능 저하에 따른 보수 또는 보강 필요

라. 문제점

- 문화자치센터(농촌협약 사업) + 행정복지센터(군 자체사업) 복합화 계획수립 관련 사업부지 내, 위치한 기존 건물에 대한 처리계획 미확정
 - ⇒ 금회 사업추진 시 반영될 도입시설과 그 규모의 산정 등을 위하여 기존건물에 대한 처리계획(존치여부)에 대한 조속한 확정이 요구됨

마. 기존 건물 처리(존치여부)에 대한 담당부서 검토(안)

시 설 명	존치 여부	담당부서 검토	비고
면사무소	존치	▶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으로 건물 존치 ⇒ 향후 행정(부속)시설 활용 예정	
복지회관	철거	▶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이나,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과,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 누수 등으로 건물의 내구성. 기능성 증진을 위한 지속적 보수가 필요 ※ 개략 보수비 : 40백만원 + 연간 3백만원 정도 ▶ 기존 건물 실별(건강증진실, 경로당, 강당) 면적 협소로 인한 현재 주민 이용불편 초래 ▶ 금회 계획된 문화자치센터와 공간 및 프로그램 중복 ▶ 면사무소 ↔ 계동마을 접속도로부 시거확보 불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지속 발생 ▶ 현 건물의 잔존가치(가감정결과) 147백만원 ⇒ 기존 건물 철거 후 문화자치센터 신축 반영	

시 설 명	존치 여부	담당부서 검토	비고
창 고	철거	▶ 건물 노후 및 경관 저해, “마리면 행정복합타운” 단지 배치계획 지장초래(저축)로 인한 사업효과 증대를 위한 철거 ▶ 현 건물의 잔존가치(가감정결과) 18백만원 ⇒ 기존 건물 철거 후 행정복지센터(군자체) 반영	
아동센터	철거	▶ 건물 노후 및 경관 저해, 초등생 안전사고 우려 ▶ 면사무소 ↔ 계동마을 접속도로부 시거확보 불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지속 발생 ▶ 현 건물의 잔존가치(가감정결과) 13백만원 ⇒ 기존 건물 철거 후 문화자치센터 신축 반영	

바. 향후계획

- 2023. 11. ~ 12.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 2023. 1. ~ 2024. 2.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관련
경남도 승인 및 고시
- 2024. 3. ~ 10. :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고시
- 2024. 10.이후 : 공사 착공 및 준공(장기계속공사)

사. 기대효과

- 기존 건축물 철거 및 복합화 추진에 주민이용성 확보
- 노후 건축물 철거에 따른 쾌적한 환경 조성
- 사고위험 교차로 시거 확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건축물 현황 및 적정시설 규모 검토 : 첨부 참조

첨부1

사업부지 내 건물현황 및 처리계획



① 마리면사무소【사용승인 : 1988. 12. 31.】

- 1종근린생활시설(지하1층,지상2층) A=600.25㎡
- 1층 : 면사무소
- 2층 : 면장실, 회의실

⇒ 처리계획 : 건물 존치(행정 부속시설 등 활용)

② 마리복지회관【사용승인 : 1988. 12. 31.】

- 1종근린생활시설(지상2층) A=453.15㎡
- 1층 : 노인회관, 체력증진실
- 2층 : 다목적실, 회의실

⇒ 처리계획 : 철거 후 문화자치센터(농촌
협약 사업) 반영

③ 마리면 창고【사용승인 : 2011. 9. 26.】

- 창고시설(지상1층) A=144.00㎡

⇒ 처리계획 : 철거 후 행정복지센터(군
자체 사업) 반영

④ 마리지역아동센터【사용승인 : 1988. 1.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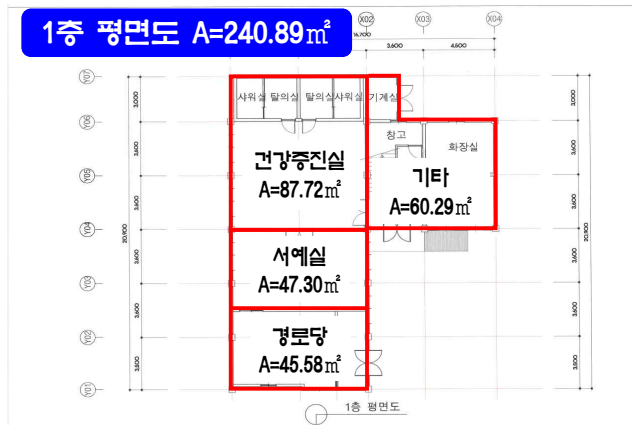
- 1종근린생활시설(지상1층) A=81.7㎡
- 2011년 (면대본부→지역아동센터 전환)
- 학생정원 19명 중 17명 운영

⇒ 처리계획 : 철거 후 문화자치센터(농촌
협약 사업) 반영

첨부2

층별 평면도 및 적정시설 규모(안)

층별 건축평면도 (2층, 연면적 A=453.15㎡)



적정시설 규모 검토(안)

이용현황(주민수요) 및 적정규모 검토(안)

- 기존 마리복지회관 시설협소로 인한 주민참여도 및 이용성 저하

구 분		건강증진실	경로당	강당
현재	이용자	30인	10인	120인
	규모	87.72㎡	46.44㎡	153.94㎡
수요	최대이용	150인	50인	200인
	일평균이용	(추정) 50인	(추정) 30인	-
	최대규모	240.90㎡	112.00㎡	321.30㎡
	적정규모(안)	50인	25인	200인
		120.00㎡	80.00㎡	280.00㎡
복상	최대이용	100인	40인	250인
	일평균이용	50인	30인	-
	규모	136.26㎡	96.25㎡	330.00㎡

※ 최대규모 산정 기준 : 한국농어촌공사 지침 적용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문화·복지 시설 규모결정 기준

※ 적정규모 산정(안) : 복상면 행정복지센터 기준

【 관 계 법 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2. 4.>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환을 할 때 교환하는 일반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44조(교환) ① 법 제39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 된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